의안번호		제 649 호
의	결	년 월 일
연 월	일	(제 회)

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21년 3월 3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649 제출연월일: 2021년 3월 3일 제 출 자: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국립·도내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평균 금액 적용으로 형평성 확보
- 위약금 최소화 등 이용자 부담경감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

2. 주요내용

- 보훈대상자에 5.18민주유공자 추가(안 제3조)
-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조정(안 제9조)
 - 충북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평균으로 인상
- 자연휴양림 예약 신청 및 결제일 변경(안 제11조)
-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 조정(안 제12조)
- 위약금 처리 면제 "재난" 정의 구체화(안 제13조)
 - 위약금 면제 대상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준법 재난 명시화
- 시설사용료 환불 및 배상적용 기준 일원화(안 제14조)
 - 위약금 및 배상금 최대 20%로 일원화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 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 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(제외사유서 붙임)

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10호 "특수임무부상자"를 "특수임무부상자 및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"로 한다.

제11조제3항 본문 중 "예약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"를 "예약일의 다음 날 23 시 50분까지"로, "결재"를 "결제"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"3일 이내(성수기 10일 이내)일 경우에는 예약 즉시"를 "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"로, "결재하여야 하며, 결재하지"를 "결제하여야 하며, 결제하지"로 한다.

제1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예약자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별표 1,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설물 사용에 대한 예약을 완료하였 거나 시설물을 사용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[별표 1]

<u>시설사용료</u>

□ 시설사용료 기준

구 분	기준	사용시간	1일 요금(원)			
			비수기 주중	성수기 및 주말	비 고	고
숲속의 집	1동/2인 (33.2m²)	1일	48,000	80,000		
	1동/4인 (36.0~37.4㎡)	1일	48,000	80,000		
	1동/6인 (32.9~46.7m²)	1일	60,000	100,000		
	1동/8인 (50.8~54.8㎡)	1일	78,000	130,000		
	1동/10인 (58.1~63.4m²)	1일	96,000	160,000		
	1동/12인 (116.6㎡)	1일	120,000	200,000		
복합휴양관	1실/4인 (25.2m²)	1일	42,000	70,000		
	1실/6인 (37.8m²)	1일	54,000	90,000		
	1실/10인 (62.9m²)	1일	84,000	140,000		
산림휴양관	1실/4인 (32.4m²)	1일	48,000	80,000		
	1실/6인 (42.6m²)	1일	60,000	100,000		

시설사용료의 감면율

구분	감면대상	기준	감면요율	비고
숲속의집, 복합휴양관, 산림휴양관	장애인	중증	요금의 50% 할인	
		경증	요금의 30% 할인	
	국가보훈대상자	1~3급	요금의 50% 할인	
		4~7급	요금의 30% 할인	비수기
	다자녀가정	요금의 30% 할인		주중에 한함
	병역명문가 가족		요금의 30% 할인	
	도민	요금의 20% 할인		
	도민대상 및 명예도민		요금의 50% 할인	

시설사용료 환불 및 배상

구 분	적 용	환불 및 보상규정	비고
1.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	가.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나.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다. 사용당일 취소 ※ 예약금 입금 당일취소	-전액환불 -예약금의 10% 공제후 환불 -예약금의 20% 공제후 환불 -전액 환불	
2.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	가.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나.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다.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	-예약금환불 -예약금환불 및 시설사용료 10%배상 -예약금환불 및 시설사용료 20%배상	
3.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의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		-전액 환불	
4. 사용기간 만료 전에 퇴실할 때 (재난,관리부실)		-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금액 환불	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혀 행 개 정 안 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3조(정의) -----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. 1.2.3.4.5.6.7.8.9.(현행과 같음) 10. "국가보훈대상자"란국가보 10. -----훈대상자"란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| 에 따른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 혁명 부상자, 공상공무원, 특별 공로상이자, 6·18자유상이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공무 원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| 에 따른 재해부상 군경, 재해부상공무원, 「특수 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 무부상자 및 「5.18민주유공자 무부상자를 말한다. 예우에 관한 법률 | 에 따른 5.1 <u>8 민주유공자----</u> 제11조 ①② (현행과 같음) 제11조(예약신청 및 성립) ③ 예약자 명의로 예약한 날로 ③ ----- 예약일의 다 부터 3일 이내에 도에서 지정 음 날 23시 50분까지 -----한 계좌에 예약금을 전액 납 입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재하

여야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

본다. 다만 예약일이 사용일로 재하여야 하며, 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신청이 취소된 다.

제13조(위약금 처리) <신 설>

부터 <u>3일이내(성수기 10일 이 ---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</u> 내)일 경우에는 예약 즉시 결 약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결제하여야 하며, 결제하지 -

제13조 ① ② ③ ④ (현행과 같음) ⑤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예약자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약 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 다.

관련법령 발췌

[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]

제21조의5(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)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2. 21.>

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8. 2. 21.>[본조신설 2015. 1. 20.][제목개정 2018. 2. 21.]

[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]

제9조의7(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)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(이하 "이용료"라 한다)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·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.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 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. <개정 2016. 6. 21., 201 7. 12. 29., 2018. 8. 14.>
- 1. 국빈 및 그 수행원
- 2.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

- 3.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
- 4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- 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 3급까지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)
- 6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
- 7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 공자와 그 유족
- 8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·18민주유 공자와 그 유족
- 9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- 10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
- 10의2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
- 10의3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
- 10의4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에 따른 의상자·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

- 1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12. 「산림보호법」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
- 13.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
- 14.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읍 면 동에 거주하는 사람
- 15.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
- 16.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,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5. 12. 31.]

제10조(자연휴양림등의 위탁) ① 법 제22조에서 "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·단체 등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·단체로서 자연휴양림, 산림욕장, 치유의 숲,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·단체를 말한다. <개정 2 010. 9. 17., 2012. 1. 6., 2014. 12. 3., 2017. 6. 27., 2017. 12. 29.>

1.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

1의2. 「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

- 2. 「민법」에 따라 산림문화·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
- 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- 4. 독림가,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단체
-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, 산림 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 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 <신설 2010. 9. 17.>[제목개정 2017. 12. 29.]

[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]

-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9. 12. 29., 2011. 3. 29., 2012. 2. 22., 2013. 3. 23., 2013. 8. 6., 2014. 11. 19., 2014. 12. 30., 2015. 7. 24., 2016. 1. 7., 2017. 1. 17., 2017. 7. 26., 2018. 9. 18., 2019. 3. 26., 2019. 12. 3.>
 - 1. "재난"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 - 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 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1조제4항제1호
 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 - 1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○ 사 유

-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설사용료 조정 및 감면 등에 관한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.

○ 작성자 :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창규